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부속동물사육장규정

제정 1986. 6. 17 개정 1992. 7. 28 개정 1994. 11. 28 개정 2010. 2. 8 개정 2014. 4. 7 개정 2020. 7. 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3조에 규정된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부속동물사육장(이하 "사육장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 2. 8) 제2조(직무) 사육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축산학문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각종 가축 및 시설 확보
- 2. 교수의 연구 및 학생 실습의 수행
- 3. 축산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 및 가축의 개량, 품종의 도입과 보급
- 4. 실험·실습을 통한 축산발전 및 가축의 생산성 증대에 공헌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교육훈련 제3조(조직) ① 사육장에는 사육장장을 두고 사육장장은 생명산업과학대학 소속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생명산업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1994. 11. 28, 2010. 2. 8)
 - ② 사육장에는 기초연구부와 응용연구부·스마트ICT축산부·관리과를 둔다.(개정 2020. 7. 6.)
 - ③ 각 연구부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, 교원과 연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4. 4. 7)
 - ④ 동물사육장의 축산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연구원(산학협력단 소속 포함)을 둘 수 있고, 연구원의 자격, 임기 등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(개정 2020. 7. 6.)
- ⑤ 관리과에는 과장을 둘 수 있으며 직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4. 4. 7, 2020. 7. 6.) 제4조(임무) ① 각 연구부는 각종 연구활동과 실험·실습 교육을 전담한다.
 - ② 기초연구부는 가축영양·육종번식·축산물가공 및 축산경영관리 등의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 - ③ 응용연구부는 대가축・중소가축・가금 및 초지 등의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 - ④ 관리과는 일반서무·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.
 - ⑤ 스마트ICT축산부는 스마트ICT축산 사업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(개정 2020. 7. 6.)
- 제5조(사육장 이용) ① 사육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학생 실험·실습 및 교수의 연구자료로 제공 할수 있다.
 - ② 실험·실습 및 연구등의 목적으로 사육장의 가축과 포장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육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③ 실험・실습 및 연구가 완료된 생산물은 사육장에 이관하여야 한다.
- 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) 사육장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사육장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육장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사육장장의 추천으로 생명산업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

(개정 1994. 11. 28, 2010. 2. 8, 2014. 4. 7)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사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사육장 규정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사육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부 칙(1986. 6. 17)

이 규정은 198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4. 11. 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2. 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 4. 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7. 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